

— 原子力法 改正 主要内容 紹介 —



林 瑾 洙
(科技處·原子力政策課長)

I. 序 言

지난 4月8日 第129回 臨時國會에서 政府가 提出한 原子力法中 改正法律案이 議決되고 이 어 5月12日부로 法律 第3850號로 同改正 法律案이 公布되었다.

우선 그 改正規模를 보면, 總 122個 條文 및 附則 6個條로 構成된 既存 原子力法中 12個條文을 新設하고, 47個條文을 改正·補完하고, 4個條文을 削除하는 등 '82年 全面改正 이후 最大의 改正規模일 뿐만 아니라 그 内容面에서도 原子力委員會의 國務總理所屬으로의 格上, 原子力委員을 少數精銳의 長官級으로 格上하는 한편, 放射性廢棄物 管理基金의 設置 및 原子力事業者에 대한 放射性廢棄物 負擔金 부과규정의 新設 등을 비롯하여 國際規制物資의 計量管理規程의 新設, 原子力發電所 建設에 關한 設計 및 工事方法의 申告制度의 폐지 및 放射性同位元素의 使用規制의 緩和, 補完 그리고 行政制度의 民主化를 爲한 行政聽聞制度의 導入 등 실로 우리나라 原子力事業 發展의 새로운 里程碑가 될 劃期的인 内容들이 改正·反映되었다 해도 過言이 아닐 것 같다.

本稿에서는 이번 原子力法中 改正法律에 대하여 그 改正背景과 重要內容을 中心으로 紹介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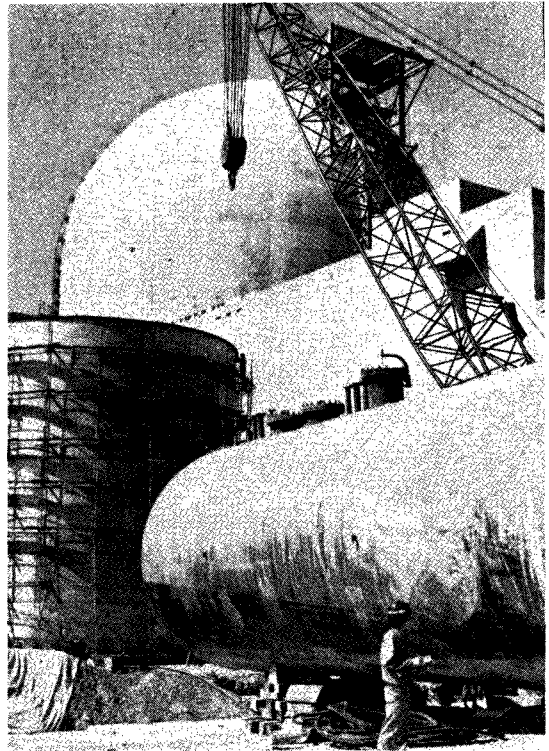
II. 原子力法 改正의 背景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과 이에따른 放射線에 의한 災害의 防止와 公共의 安全을 도모하기 爲해 1958年 3月 法律 第483號로 制定된 原子力法은 그 構成內容에 있어서 條文의 大部分이 原子力事業의 部門別 認·許可 및 安全規制關聯條項으로서 規制法的인 性格이 他法律에 비해 매우 強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原子力의 利用助長機能보다는 公共의 安全과 國民의 生命

保護를 더 엄격히 規定하고 있다. 그동안 政治 社會的·技術的 變化에 따라 9 차례에 걸쳐 改正, 補完되어 왔으나, 核武器非擴散條約의 철저한 이행요구의 증대와 國際核物質規制의 強化 國際情勢의 變化와 國內 原子力發電所의 運營基數의 增加로 核燃料의 國內所要量增加, 放射性廢棄物의 處理·處分에 대한 大單位 新規事業의 發生, 放射性同位元素의 產業的 利用의 擴大 등 原子力利用·開發 영역이 급속히 擴大되고 있을 뿐아니라 그동안 9基의 原電導入 및 建設過程에서 國內原電建設技術水準의 향상과 運轉經驗의 축적, 그리고 國內産業의 전반적인 基盤의 擴充 등으로 外國에 전적으로 依存해온 原電建設의 初期段階와는 달리 이제는 國內技術主導로 그 建設樣狀이 바뀌고 있을 뿐아니라 특히 原子力技術의 國際政治의 特殊性和 高度의 專門性和 綜合科學의 性格을 띤 巨大産業 (Super Industry)이라는 점과 이의 技術自立이 國內 에너지의 準自立化達成이라는 側面 등 國內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가 至大함을 고려하여 從前의 安全規制 爲主의 原子力法 體系를 原子力 安全性 確保에 支障이 없는 범위내에서 産業助長的 法體系로 轉換하여 原子力技術自立, 安全性確保 그리고 經濟性 提高라는 大前提 아래 이번 同法改正이 단행된 것이다.

Ⅲ. 原子力法 改正의 主要內容

우선 改正된 法律의 主要骨子を 보면 原子力委員會 格上, 發電用原子爐 등에 대한 設計 및 工事方法 申告制度의 폐지, 自體檢查制度의 新設, 國際計量管理規程의 新設, 韓國에너지研究所에 대한 放射性廢棄物 處理·處分 專擔機關으로의 指定, 委託業務遂行費用 負擔 根據의 新設, 行政聽聞制度의 導入 등으로 要約될 수 있으며, 關聯部門別로 主要內容과 改正事由를 살펴 보기로 한다.



가. 原子力委員會의 格上

(法第3條 및 同第5條)

科學技術處所屬의 原子力委員會를 國務總理所屬으로, 委員長을 科學技術處長官에서 副總理로, 委員을 次官級에서 長官級으로 格上하고, 委員數를 7人以上 9人以下에서 5人以上 7人以下로 少數精銳化하였으며, 當然職 委員으로 副總理를 포함하여 科學技術處長官·動力資源部長官·韓國電力公社社長으로 하고, 기타 委員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는 者로 하였는 바, 委員會를 國務總理所屬으로 格上한 것은 科學技術處所屬의 委員會로서는 汎部處의 次元에서 國家原子力政策決定이 어려운 現實性을 감안하여 委員長인 副總理로 하여금 各部處間의 異見을 원활히 調整하기 위한 것이다.

委員을 5人以上 7人以下의 少數精銳의 長官級으로 格上한 것은 原子力政策의 國際政治의 特殊性和 國內産業 및 經濟發展에 미치는 영향

이 至大함을 考慮하여 原子力政策決定 機能을 強化하고 委員會에서 審議·議決된 政策은 國家的 次元에서 一貫性있게 推進토록 함으로써 原子力産業의 持續的인 發展과 原子力核心技術自立을 조기에 조성하고, 國際 原子力政策變化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對處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나. 發電用原子爐의 認·許可 및 檢査制度의 緩和·補完(法第14條 및 同第16條)

從前 發電用原子爐의 建設許可를 받은 者는 工事着手前에 그 設計 및 工事方法을 科學技術 處長官에게 申告토록 하던 것을 工事進行에 關係없이 그와 關聯된 設計資料만을 工事가 完了되기 前까지 提出토록 하여 事實上 從前의 建設許可→設計 및 工事方法의 申告→運營許可 등의 3段階 原電建設·運營의 認·許可 制度를 建設許可→運營許可의 2段階로 대폭 完화한 조치로써 이는 原子力發電所의 安全性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認·許可 절차 및 關聯 提出資料를 간소화하여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는 原子力發電所의 建設工期 지연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고 原電建設의 經濟性을 提高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先進外國에서도 原電建設 認·許可制度를 2段階 認·許可制度로서 採擇하고 있으며, 設計 및 工事方法의 申告制度는 우리나라가 原電導入 初期段階에서는 外國의 技術資料 入手와 國內 原電建設技術의 水準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制度였으나, 우리나라도 9基의 原電導入 過程에서 國內産業界의 技術水準이 성숙되고 經驗이 축적됨에 따라 同制度의 存在意味가 크게 弱화되었으며, 오히려 不必要한 節次가 되어 建設工期의 지연요소가 되므로 꼭 필요한 設計資料만을 工事進行中에도 提出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發電用原子爐의 設置·運營에 따르는 檢

査의 一部를 事業者의 自體檢査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根據를 마련 하였는 바, 이것은 原電建設 및 運營基數의 증가에 따르는 모든 檢査業務를 政府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人力 및 豫算上의 어려움이 있으며, 事業者인 韓國電力公社는 政府投資의 公企業으로서 그동안 自體檢査技術開發 및 經驗이 점차 축적되어 가고 있으며, 原電의 安全性確保에 一次的인 責任이 있음을 감안한 措置로서 事業者의 自律的인 參與를 통해 自體檢査技術向上 및 安全性確保能力을 배양시키고, 政府와 事業者間의 役割分擔을 合理的으로 調整함으로서 政府規制檢査의 效率性을 提高하기 위한 것이다.

다. 國際規制物質의 計量管理規程 新設(法第15條의 2)

發電用原子爐設置者는 國際規制物質의 計量管理規程을 定하여 國際規制物質의 사용개시 전에 科學技術處長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는 바, 이것은 우리나라가 核武器非擴散條約을 비롯한 各種 國際協定·協約 加盟國으로서 實質的으로 이들 國際約束의 規制를 받아오면서도 國內法에 이에 대한 制度的 裝置가 없어 美國 등 核先進國으로 부터 核武器非擴散條約과 關聯하여 國際政治·外交的으로 不必要한 誤解의 素地를 안고 있었는 바, 이번 法改正에서 이에 대한 法的 根據를 마련함으로써 安全保障措置(Safeguards)의 充實한 履行을 對內外的으로 認識시켜 原子力關聯技術 및 核物質의 원활한 導入을 도모하고 아울러 核物質 등의 國內在庫 및 利用現況을 體系的으로 管理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라. 放射性同位元素 등의 使用制度改善(法第65條 및 同第72條)

放射性同位元素 또는 放射線發生裝置를 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放射性同位元素 등의 免許를



받은 자 중에서 安全管理責任者를 選任하여 科學技術處長官에게 申告토록 하던 것을 許可使用者와 申告使用者를 구별하여 許可使用者와는 달리 申告使用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放射線安全管理責任者를 選任하여 申告토록 하고 있는 바, 一定數量以下の 密封된 同位元素나 一定容量以下の 放射線發生裝置의 安全管理 責任者의 資格을 免許所持者에서 一定한 教育訓練을 받은 者로 緩和한 것으로서 즉, 科學技術處長官이 指定하는 教育訓練機關에서 原子力利用에 隨伴하는 放射線障害防禦 및 安全性確保에 必要한 教育訓練 履修者 中에서 選任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放射線의 產業的 利用의 急増과 免許所持者의 不足 등 社會的 諸般 與件을 감안하여 事業規模가 比較的 적은 申告使用 業體에 대해서 放射線安全管理者 選任要件을 現實에 맞게 調整한 것이다.

한편 放射性同位元素 및 放射線發生裝置 使

用許可를 받은 者가 一時的으로 使用場所를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申告토록 하였다. 이는 既存의 原子力法施行令에 規定한 內容을 法律로 格上·改正하여 違反時 處罰의 根據를 두기 위한 것이며, 一定數量以下の 密封된 放射性同位元素를 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申告에 의하여 使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에 追加하여 一定容量以下の 放射線發生裝置도 申告에 의하여 使用할 수 있도록 緩和하였다. 이는 同裝置의 大部分이 分析·計測·檢索 등에 使用되는 裝置로서 器機自體가 安全管理에 容易토록 設計 및 商品化되어 있고 國內産業發展에 따라 그 利用이 急激히 增加하고 있어 許可使用에서 申告使用으로 節次를 簡素化하여 放射線 利用業務의 能率性을 提高토록 하였다.

마. 放射性廢棄物 管理基金의 設置 등 (法第84條 내지 同第85條의 3)

原子力利用에 따라 必然的으로 發生되는 放射性廢棄物은 그 處理·處分에 있어서 高度의 專門技術과 막대한 投資가 要求될 뿐 아니라 最小限 數百年間 國家的 次元에서 계속적으로 管理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國內 原子力發電所의 運營基數 增大에 따라 계속 發生 累積되고 있으며, 同 廢棄物은 大部分 原電敷地內에 臨時貯藏形態로 管理되고 있으나 그 貯藏能力도 數年內에 限界에 到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管理對策의 確立이 時急한 바, 이를 위한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法改正에 放射性廢棄物 管理를 위한 所要財源을 安定的으로 確保하기 爲해 原子力事業者의 放射性廢棄物 管理費用 負擔에 관한 根據를 新設하였고, 이 負擔金을 主要財源으로 하여 政府가 放射性廢棄物管理基金을 設置, 運用토록 하고 廢棄物處理·處分의 特殊性과 專門性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專門研究機關인 韓國에너지研究所가 同事業을 전담토록 하였다.

한편, 放射性廢棄物發生者가 負擔하는 金額은 發電用原子爐運營者에 대하여는 當該 原子爐 運轉으로 생산되는 電力量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料率을 곱한 金額으로 하고, 發電用原子爐 運營者이외의 原子力關係事業者에 대하여는 放射性廢棄物의 種類 및 數量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額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요율 및 負擔金額은 大統領令에서 곧 정해 질 예정이다.

바. 委託業務 遂行費用負擔의 根據新設 (法第111條第3項)

科學技術處長官으로부터 業務를 委託받은 機關은 그 業務遂行에 必要한 費用을 當該 原子力 關係事業者에게 負擔시킬 수 있는 根據를 新設 하였으며, 이는 現在 法第112條에 建設許可申請 手數料 등이 計上되어 있으나, 이는 日常行政 經費의 性格의 手數料로서 許可發給까지 長期 間 많은 專門人力의 投入이 필요한 安全審査 및 檢査 등에 필요한 費用은 手數料에 計上이 어려우며, 認·許可 審査 등 安全規制 委託業務에 따르는 費用은 政府의 一般會計의 豫算에 計上하는 方法과 事業者가 負擔하는 方法이 있을 수 있으나 委託業務의 安定的 遂行과 業務遂行에 따르는 費用計上의 適正性維持가 容易한 費用發生者 負擔原則에 依據하여 安全審査 및 檢査 등에 필요한 費用은 原子力關係事業者가 負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行政發展制度를 위한 改善事項(法第13條 第2號, 法第20條, 法第104條의2 등)

政府에서는 行政制度의 成長發展을 爲한 主要 政策 課題로서 法律相互間의 均衡維持와 行政 簡素化 등을 爲한 여러가지 課題를 索出하여 各種 法律改正時에 反映하고 있는 바, 이번 本法 改正時에 反映된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原子力關係事業者의 缺格事由를 從前

에는 原子力法을 포함하여 他法律에 의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나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中에 있는 者로 광범위하게 규정된 것을 原子力法을 違反하여 前述한 刑事 處罰을 받은 者 등으로 限定하였으며,

둘째, 原子力關係事業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 讓受人, 合併에 의한 法人은 申告하도록 하던 것을 認可를 받아야 地位를 承繼할 수 있도록 強化하였으며,

셋째, 科學技術處長官이 許可取消 등 處分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處分相對方 또는 代里人에게 事前에 陳述할 機會를 주도록 行政聽面制度를 導入하였으며, 그밖에 罰則條文을 改正하고 過怠料 條項을 新設하여 免許證의 記載事項 및 變更申告를 違反한 者에 대하여는 5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하도록 하던 것을 50萬원 以下の 過怠料에 處하도록 刑事罰을 行政罰로 緩和하였다.

IV. 結 語

이상과 같이 原子力法改正의 背景과 主要內容을 紹介하였다. 紙面關係上 改正·新設·削除된 모든 條文 및 項目을 일일이 紹介하지 않았으나 全體的인 法改正의 흐름과 重要視되는 條項을 中心으로 說明하였다. 이밖에 法에서 구체적으로 規定하지 못한 事項과 大統領令으로 委任된 事項에 대해서는 현재 科學技術處를 中心으로 學界, 產業界 및 研究所 등의 關係專門家들이 參與한 가운데 그 後續作業이 進行中에 있으며, 곧 原子力法施行令 및 同施行規則 草案이 發表될 예정으로 있다. 原子力法 附則에서 公布후 6個月後에 施行토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今年 11月 8日부터 改正된 原子力法이 本格的으로 施行될 것이다.